

2026년 소상공인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공고

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 지원을 위한 「2026년 소상공인 물류 서비스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8월 13일
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

1

사업 개요

- ☐ 사업목적 : 소상공인 물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
- ☐ 지원대상 : 소상공인
- ☐ 사업규모 : 연간 총 150개사
 - * 사업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
- ☐ 지원내용 : 상품 보관, 포장, 배송 등 물류 관련 서비스 제공
 - *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2

신청자격 및 요건

- ☐ 지원 대상·상품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,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

<지원 제외대상>

구 분	내 용
제외 업종	○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, <붙임2> 참조
휴폐업 및 부도	○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세금 체납	○ 대표자(소상공인)의 국세·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	○ 대표자(소상공인)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지원제외 상품	○ 해외 수입상품,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* 단,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

3

신청 및 접수

□ 신청 기간 : '26. 8. 13. ~ 8. 27.

□ 모집 규모 : 20개사 내외

* 기선정사 중 포기자 발생 및 수행기관별 잔여 물량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** 지원 대상 기업의 수행기관 배정은 내부 사정 및 수행기관별 잔여 물량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며, 특정 수행기관 지정 요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

□ 신청 방법

○ (사업신청) 판판대로(www.fanfandaero.kr) 회원가입 후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지원사업을 신청

○ (제출서류) 사업자등록증명원, 소상공인확인서,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등

구 분		내 용	비 고
①	사업자등록 증명원	·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	국세청 홈택스
②	소상공인 확인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(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)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
③	국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국세청 홈택스
④	지방세 납세증명서	· 신청일 기준,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· 완납증명서여야 인정(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)	정부24
⑤	OEM증명서	·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(해외ODM 불인정)	해당 시 제출

*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(업로드)하며, 온라인 사업 신청 시,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(소상공인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) 제출 불필요

** 단,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
(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)

*** 유효기간 예시 : 사업신청일이 8.13일이면 유효기간이 8.13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

<참고. 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 발급 안내>

○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'중소기업확인서(소상공인)'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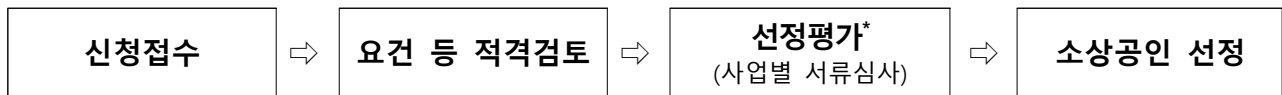
-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
- '소기업(소상공인)'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
- 확인서 발급 : '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' 접속
(URL : <https://sminfo.mss.go.kr/>)

* 발급문의처

- ① 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
- ② 온라인 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-6508



□ 선정 절차



*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(최종 점수 70점 이상 소상공인 대상으로 예비 선정 처리)

** 동점자가 발생 시, 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 > ②판판대로 시스템 신청 접수 일시가 빠른 순으로 결정

*** 수행기관별 선정 업체 포기, 자부담 미납, 모집 규모 확대 등 사유 발생 시 예비 선정 업체를 지원할 수 있음(단, 해당 시점 기준 한도 초과 또는 선정 포기 업체는 제외)

**** 본 사업은 메뉴판 지원한도(600만원)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, 예비 지원 대상이 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□ 선정평가 기준 : 세부 지원내용 참고

□ 우대사항

- 가점부여 :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(최대 5점 내에서 적용)

해당 사항	비 고
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	해당 시 +5점
② '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(TOPS) 2단계 진출 소상공인	
③ 백년소상공인, 로컬크리에이터	
④ '23~'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·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- 문체부 관광공모전(기념품 부문) * 한국관광공사 주최 -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·중장년 부문	
⑤ '25년 우수 특구(탁월·우수 등급)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	
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(coop.go.kr)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	해당 시 +3점
⑦ '23~'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	

*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

주의 사항 : 8개 사업 대상

-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판매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
- **사업별 단가 합산 연간 총 6백만원 한도 내 선정 지원**이 가능하므로, 신청 시 개별 사업의 단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
※ 예시 : 1·2차에 '상세페이지'와 '온라인쇼핑몰'에 선정된 경우

* 지원 한도(6,000,000원) - 상세페이지(1,602,000원) - 온라인쇼핑몰(1,800,000원)
= 잔여 한도 2,598,000원 → 잔여 한도를 초과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참여 불가

세부 사업명	정부지원금	자부담 비율	지원한도
① 상품 개선	2,385,000원	10%	정부지원금 최대 6백만원 (1개사 당)
② 상세페이지 제작	1,602,000원		
③ 콘텐츠 제작	2,349,000원		
④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	1,800,000원	없음	
⑤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지원	3,501,000원	10%	
⑥ SNS 마케팅	2,475,000원		
⑦ 온라인 홍보	2,475,000원		
⑧ 물류 서비스	1,980,000원		

* 정부지원금(90%) 외에 자부담금(10%)과 부가가치세(10%)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

- 사업별 선정 일정에 따라 먼저 **선정된 사업들의 단가 합산 금액이 지원 한도(6백만원)를 초과**하는 경우,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**'탈락'** 처리됨에 반드시 선정 순서를 참조 하시고 신청 사업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.

★ **선정 순서** : 물류 서비스 ▶ 온라인쇼핑몰 ▶ 라이브커머스 ▶ 상품개선 ▶ 상세페이지 ▶ 콘텐츠 제작 ▶ SNS 마케팅 ▶ 온라인 홍보

※ 예시 : (8/1) 물류 서비스 → (8/2) 온라인쇼핑몰 → (8/3) 상품개선 순으로 평가 시, 앞선 '물류 서비스', '온라인쇼핑몰' 모두 선정된 경우, 상품개선은 **'자동 탈락 처리'**

□ 지원 사업 운영방법

- (사업신청) 개별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따라, 8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단, 지원 한도 내에서 선정됨
- (사업선정)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
 - * (지원한도)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(국비)를 합산하여 최대 **6백만원**을 초과할 수 없고,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
- (지원제한)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* 시,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,
 - * 예시) '26, '27, '28년 연속참여 시, '29년부터 지원 불가('26년부터 적용)

□ 유의사항

<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>

※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,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,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*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(수행기관-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)

**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

※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, 5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. 단,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,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.

-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,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.
-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.

* 제출 방식 :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,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, 기타 설문조사 등

-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,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의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(접수 반려, 탈락 등)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.
-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(희망리턴패키지)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,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 이후,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,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,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,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.
-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.

□ 문의처 : 1899-0309(온판상담소)

6

세부 사업 내용

☐ 사업목적 : 소상공인 물류 부담 완화 및 경쟁력 제고

☐ 모집규모 : 20개사 내외

* 기선정사 중 포기자 발생 및 수행기관별 잔여 물량 상황 등에 따라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

☐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: 220,000원

(단위 : 원)

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부가가치세	
	정부보조금 (90%)	자부담금 (10%)
2,200,000	1,980,000	220,000

*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(소상공인)가 별도 부담

☐ 지원내용

※ 수행기관별 보유 인프라에 따라 세부 지원 범위가 상이하므로, 상세 내용은 수행기관별 서비스 소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판판대로 물류 서비스 공고 페이지 내 첨부 파일 참고

○ (물류지원) 온라인 판매 소상공인의 상품을 더욱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관·포장·배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 지원

* 참여업체 수요 및 수행기관별 제공 가능 서비스에 따라 풀필먼트, 상품 수거·배송 연계, 부자재 지원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

여기서 잠깐! 풀필먼트 서비스란?

- 지원물품을 물류창고에 입고하면,
- 판매처 주문 발생 시 보관·포장·배송까지 수행기관이 지원합니다.
- 직접 포장하거나 택배를 보내지 않아도 되어 판매와 마케팅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

입고
상품 입고



보관
상품 보관



포장
상품 포장



배송
택배 발송

- (입·출고) 주문 정보 기반, 상품 출고 및 상시 입고 지원
- (재고관리)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을 통한 재고 현황 확인
- (포장·배송) 요청 주문 건에 대하여 상품 포장 및 배송 지원
 - * 택배박스, 친환경 포장재, 테이프 등 상품 포장에 필요한 부자재 지원
 - ** 방문수거, 내일·새벽·당일배송 등 수행기관별 특화 배송 서비스 제공
- (배송CS) 배송, 오배송, 반품·교환 등 관련 고객 문의 응대

□ 평가 항목

세부평가기준	평가지표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부적합
지원 적합성 (35점)	물류 시스템 적합성 (크기, 무게, 보관 등)	35 ~31	30 ~26	25 ~21	20 ~16	15
상품 경쟁력 (30점)	상품 대중성(물동량 등), 가격, 디자인 등	30 ~27	26 ~23	22 ~19	18 ~15	14
사업 참여 역량 (20점)	상품 기술 완결성, 사업 필요성·참여 의지 등 적극성	20 ~18	17 ~15	14 ~12	11 ~9	8
성장 가능성 (15점)	온라인 판매 경험 및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	15 ~13	12 ~10	9 ~7	6 ~4	3
가점 (5점)	우대 대상사업 여부	해당 시 5				

*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/ 동점 시 ①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
> ②판판대로 시스템 신청 접수 일시가 빠른 순으로 결정

※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 후, 입고일로부터 최대 90일간 물류서비스 지원(단, 물류 서비스 이용은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가능)
 - * 선정 후 지원 2개월(D+60일) 시점에 물류비 70% 이상 소진 시 지원 기간 연장 가능 (단, 당해연도 11월 30일 이내에 한함)
- 지원 예산 소진 이후 발생하는 물류 비용은 본 사업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며, 참여기업과 수행기관 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정산하여야 함
- 수행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자부담금 외 보증보험 발급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
- 지원 대상 기업의 수행기관 배정은 내부 사정 및 수행기관별 잔여 물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, 특정 수행기관 지정 또는 변경 불가

<붙임2>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

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2	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·대리업(68221)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(68224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 중	흥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2	카지노 운영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“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”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

1. 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2. “관광진흥법”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 및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3. 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
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

<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>

재해피해 소상공인	융자 허용 업종
공통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
관광특구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일반유흥주점업(56211), 무도유흥주점업(56212)
특별재난지역 소재	담배도매업(46333), 무도장운영업(91291), 보건업(86), 수의업(731), 법무 관련 서비스업(711)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(712), 통관업(52991 중), 감정평가업(73904 중), 한약국·약국(47811 중)